

(주)이노션	부패방지 규정	등록번호 IBB2-22-001
제정일: 2022-12-12		개정차수: 0

표준 제·개정 기안 및 이력

결 재	구분	작 성		검 토	승 인	1 차 배포처	
	직책	시니어매니저		팀장	대표이사	전사	
	성명	김광우		이정	이용우		
	서명						
	일자	/ /		/ /	/ /		
작성처		경영혁신팀			등록처	경영혁신팀	
협 조 처							
개 정 이 력	차수	제(개)정일	시행일	주요 개정 내용			
	0	'22.12.12	'22.12.12	부패방지 규정 제정			2 차 배포처
	1						
	2						
	3						
	4						
	5						
	6						
	7						
	8						
	9						
	10						

(주)이노션	부패방지 규정	등록번호 IBB2-22-001
제정일: 2022-12-12		개정차수: 0

부패방지 규정
(IBB2-22-001)

INNOCEAN

(주)이노션	부패방지 규정	등록번호 IBB2-22-001
제정일: 2022-12-12		개정차수: 0

목 차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반부패 노력 등
제3조 정의
제2장 규정준수 및 금지사항
제4조 국내외 부패방지법 준수
제5조 부패행위 금지
제6조 직무관련자 준수
제3장 부패방지 활동
제7조 부패방지 실행 및 개선 의지
제8조 부패방지 모니터링
제9조 반부패 교육
제10조 반부패 서약
제4장 위반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
제11조 위반행위의 신고 및 처리절차
제12조 신고자 보호
제13조 준용
제5장 위반행위 제재
제14조 부패행위에 대한 조치
부 칙

(주)이노션	부패방지 규정	등록번호 IBB2-22-001
제정일: 2022-12-12		개정차수: 0

제 1 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부패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식회사 이노션(이하 “회사”라 한다)의 반부패경영시스템 정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반부패 노력 등)

회사는 부패 유발요인을 제거하고, 임직원의 윤리의식 함양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임직원”이란 회사의 임원, 직원 및 그 이외의 사람으로 계약직·기간제 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그 명칭과 관계없이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회사의 지휘·감독 하에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 “직무관련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임직원
- “금품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 주류·음식물·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 부여 등 그 밖의 유·무형의 경제적 이익

제 2 장 규정준수 및 금지사항

제4조 (국내외 부패방지법 준수)

임직원은 회사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대한민국 『형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특정금융거래 정보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범죄 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제반 부패방지 관련 법규와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영국의 『뇌물방지법(Bribery Act)』 등 해외 반부패 관련 법령 및 그 밖의 사내 규정을 준수하고 이에 위반되거나 위반되는 것으로 의심받을 수 있는 행위에 관여하지 아니한다.

(주)이노션	부패방지 규정	등록번호 IBB2-22-001
제정일: 2022-12-12		개정차수: 0

제5조 (부패행위 금지)

임직원은 회사의 업무와 관련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직무관련자로 하여금 제3자에게 금품 등을 수수하도록 하는 행위
2.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자와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게 부정한 목적으로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
3. 자신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4. 회사의 예산사용,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계약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5. 직무관련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는 행위
6. 위 각호의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권고·제안·유인하는 행위
7. 기타 관련 법령 및 사내 규정 등에 위반되는 사항으로서 사회상규 상 부패행위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

제6조 (직무관련자 준수)

임직원은 직무관련자 중 회사와의 계약관계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가 국내외 반부패 관련 법령 및 본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기로 하며, 필요시 반부패 관련 교육을 제공하기로 한다.

제 3 장 부패방지 활동

제7조 (부패방지 실행 및 개선 의지)

회사는 부패방지를 위하여 투명한 경영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데 노력한다.

제8조 (부패방지 모니터링)

- ① 회사는 임직원 또는 직무관련자를 대상으로 부패방지 관련 설문조사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는 등 모니터링 업무를 실시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 결과 문제발생의 소지가 발견된 경우 회사는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로 한다.

제9조 (반부패 교육)

- ① 회사는 임직원의 반부패 의식 함양과 회사의 투명성 향상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임직원 대상 반부패 교육을 실시하기로 한다.
- ② 회사는 제1항의 반부패 교육과 관련하여 매년 실시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운영하기로 한다.

제10조 (반부패 서약)

회사는 반부패 서약서를 구비하고 임직원의 신규 채용 시마다 이를 제출 받기로 한다.

(주)이노션	부패방지 규정	등록번호 IBB2-22-001
제정일: 2022-12-12		개정차수: 0

제 4 장 위반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

제11조 (위반행위의 신고 및 처리절차)

- ① 임직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른 임직원이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강요 또는 제의 받은 경우에는 부서의 장에게 알리고 회사의 제보 시스템을 통해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신고가 접수된 경우 회사는 내부적으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속히 조사에 착수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 (신고자 보호)

회사는 신고자를 보호하고 신고자에 대한 보복 등을 금지하며 신고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아니한다.

제13조 (준용)

위반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 절차 등과 관련해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회사의 『제보자 규정(보호/포상/감면)』을 준용한다.

제 5 장 위반행위 제재

제14조 (부패행위에 대한 조치)

- ① 본 규정을 위반한 임직원은 회사의 취업규칙에 의거 내부 징계절차의 대상이 된다.
- ② 회사는 임직원이 본 규정 또는 반부패 관련 법령 등을 위반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해 임직원을 대신하여 책임을 부담하거나 임직원에게 대한 지원 또는 도움 등을 제공하지 아니한다.

- 부 칙 -

제1 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